

의안번호	제 646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월 일 (제 329회)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3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4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3월 3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됨(2014. 7. 1. 시행)에 따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규정한 도세 감면을 적용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청주·청원 통합후 적용할 도세 감면을 특례 규정 신설(안 제12조)
 - 통합시 설치 이후에도 종전의 청원군지역은 통합시가 설립된 때 부터 5년간 통합전 청원군 지역과 동일한 감면을 적용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(안 제16조 및 제1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도세 감면율 적용 특례) 「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의 경우 통합되기 전 청원군 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3조 및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청주시가 설치된 때부터 5년간 통합되기 전 청원군 지역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.

제16조 중 “지방세”를 “도세”로, “제99조”를 “제184조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지방세”를 “도세”로, “제96조”를 “제180조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

제3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(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)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.

1.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
2.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38조(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① 「의료법」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(특별시·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)하고,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②~③ (생략)

④ 종교단체(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.
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.

가.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.

나.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.

⑤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·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(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)·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

제2조(설치 등)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.

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

시의 명칭	관할구역
청주시	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과 청원군 일원

[시행일 : 2014.7.1]